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

I. 개정 배경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래 중국은 16년여 동안 현행 민사소송법을 유지해왔다. 큰 골격을 이뤘던 민사소송법 시범시행안(试行)이 1982년에 시행되었음을 고려하면 중국은 현행 민사소송법을 2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셈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20여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개정안')>이 시행된다.

II. 민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단위(单位)의 협조의무 강화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단위'가 민사소송중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었다(제 103조). 개정안에서는 단위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여 벌금형뿐 아니라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정 개인이나 단위의 주요 간부, 책임자를 직접 구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103조 제2항).

1981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범시행안(中国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试行)시행
1991년 4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시행
2007년 10월 28일	제10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수정안 통과
2008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예정)

1) 중국에서 '단위(单位)'는 기업 등의 사업부문뿐 아니라 정부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단위'는 일정 부분에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까지 담당하며 이에 따라 각종 특수한 법률관계들이 발생한다.



또한 벌금의 액수도 대폭 강화하여 자연인은 1000위안 이하, 단위는 1000위안~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던 구 민사소송법(제104조)의 규정을 강화하여 자연인은 10000위안 이하, 단위는 10000위안~30000위안의 벌금을 규정하였다(제104조). 이는 구 민사소송법에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폭 인상하여 ‘집행난(執行難)’을 해결하는 한편, 현재의 경제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심 및 항소의 구체적 규정 보충

재심과 항소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규정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집행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1) 재심청구의 대상 수정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 혹은 상급법원”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부분은 삭제하고, 상급법원으로 재심청구의 대상을 한정(제178조)하였다.

구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판결의 자신이 재심하는 것으

로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청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재심청구의 사유 확대

구 민사소송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5가지 경우를 열거하였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충하여 13가지의 재심 청구의 경우를 규정하였다(개정안 제179조).

- 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 ③ 판결의 중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 ④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중요한 증거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⑤ 심리에 필요한 증거 중 객관적인 이유로 당사자가 수집하지 못하여 법원에 증거의 수집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이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하지 않은 경우²⁾
- ⑥ 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경우
- ⑦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경우(신설)
- ⑧ 재판부가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기피(回避)

*** -----

2) 인민 감찰원이 본조 제1항에서 제5항의 경우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하급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후술).

해야하지만 기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 ⑨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대리인이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신설)
- ⑩ 위법하게 변호의 권리를 박탈한 경우(신설)
- ⑪ 소환장의 송달 및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석재판이 진행된 경우(신설)
- ⑫ 재판절차에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신설)
- ⑬ 판결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문서가 취소 혹은 변경된 경우(신설)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교적 작은 부분만을 규정하여 재심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재심사유에 대해서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일곱 가지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재심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3) 재심의 절차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5일 내에 상대방에게 재심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소송 상대방은 서류를 교부받은 15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의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개정안 제180조).

(4) 인민법원의 수리기한 규정

구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재심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의무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원장의 비준을 받도록 함(제181조)으로써 재심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재심의 ‘신청(再审查申请)’ 이 비로소 ‘소송(诉)’ 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³⁾. 그러나 이러한 재심이 개정심리인지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 재심 청구기한 규정

재심 청구기한에 대해서 구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제184조는 전항규정에 추가하여 2년이 지난 후에라도 판결문서가 취소 혹은 변경되거나, 재판부의 부정부패행위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심판감독절차의 명확화

최고 인민감찰원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 대해서 구 민사소송법은 ‘심판감독절차에 근거하여’

*** -----

3) 武志国, 《民事诉讼法》修改之处, 法律资料文库, 2007.10



(제185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상급 검찰원 혹은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인민법원이나 검찰원의 재심청구의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고, 종전부터 견지되어 오던 재심신청 주체의 다원화 원칙, 즉 법원과 당사자, 검찰원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었다.

(7) 재심의 기한 규정

구 민사소송법은 검찰원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기한을 항소장을 받은 30일 내로 규정하고, 또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 인민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제188조) 하였다. 중국의 재심청구에서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와 검찰원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 규정은 검찰원의 재심청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집행력의 확보 및 강화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의 미비 및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법률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들은 집행에 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집행력의 확보 및 강화하는 규정들이 수정·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행법원의 이전을 허용

구 민사소송법은 재산상의 판결이 있는 경우,

1심 법원이 집행하도록 규정(제207조)하였으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피집행인의 소재지와 재산의 소재가 다른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법원이 판결을 집행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동급의 재산 소재지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제201조 제1항)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집행이의(執行異議) 규정

집행이의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집행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개정안에 신설되었다. 이의를 접수한 법원은 15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판결을 취소 혹은 수정하거나,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10일 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復讞)을 신청할 수 있다(제202조).

(3) 집행의 기한 규정

개정안은 제203조를 신설하여 인민법원이 6개월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이행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의 기한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종의 ‘집행감독’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4) 집행과정 중 소외인(案外人)의 이의신청 대상 변경

구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집행과정 중 소외인

이 집행목적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원(执行员)' 이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집행원이 아닌 인민법원으로 대상을 수정하고, 또한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시한을 명확히 하였다.

(5) 집행기구 설치의 주체 확대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기층 및 중급 인민법원으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법원으로 확대,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6) 집행의 신청 기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쌍방 당사자 일방 혹은 모두가 자연인(公民)일 때에는 1년, 쌍방 당사자가 법인 및 기타 조직일 때에는 6개월로 규정하였다(제219조). 개정안은 이를 모두 2년으로 개정하고 소멸시효(诉讼时效)⁴⁾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은 입법정책상 각종 시효의 완성을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시효규정은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당사자에 따른 6개월 및 1년에서 모두 2년으로 시효 규정을 개정하였다.

(7) 즉시 강제집행

피집행인이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원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16조). 구 민사소송법은 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8) 재산보고제도(财产报告制度)⁵⁾ 도입

피집행자가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통지서를 받기 전(前) 1년의 재산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제217조). 또한 재산보고를 거부 혹은 허위보고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및 구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9) 출국금지, 정보기록 및 공고 등

개정안은 피집행자가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정보기록⁶⁾, 매체를 통한 채무불이행 사실공고 및 법률에 규정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31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없던 규정으로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공고의 경우 '매체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공고한다(通过媒体公布不履行义务信息)' 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인쇄물로 공표할 수 없는⁷⁾ 한국과 비교하여, 보다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 -----

4) 중국은 구 소련민법의 영향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구분하지 않고 "소송시효(诉讼时效)" 만을 규정하고 있다.

5) 한국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제도' 에 해당한다.



5. 기타

개정안에서는 기업법인 파산청산 절차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19조를 삭제하였다. 원래 이 규정은 전민소유제 기업(全民所有制企业)에 적용하던 규정이었으나,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中화人民共和国 企业破产法)>⁸⁾이 시행됨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III. 평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는 민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90년대 초반과는 전혀 다른 법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흐름에서 개정안은 19개 조문을 수정, 신설 및 삭제하였다.

1. 추상적인 조문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였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절차상 규정의 부재 및 불명확한 규정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였다. 기한에 관한 규정이 대폭 추가됨으로써 법률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규정들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및 조

건을 삽입하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책임자에 대한 구류규정, 재산보고제도, 정보공개 및 매체를 통한 공고 등의 강력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한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는 ‘집행난(執行難)’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민사사건의 집행과정 중의 상당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3. 법률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였다.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던 90년대 초반과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은 전혀 다른 법률환경, 경제환경을 만들고 있다. 벌금 상향조정, 집행법원의 이전 허용, 정보공개시스템의 도입 등의 규정은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제도를 설계하는 흐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인 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

6) 정보기록은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在征信系统记载)” 하는 것으로 한국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유사한 제도이다. 중국의 신용정보시스템은 지난 2003년 도입되어 크게 기업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

8) 2006년 8월 27일 제 10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 2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